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명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57

발의연월일: 2025. 3. 26.

발 의 자:서명옥·김상훈·조경태

박준태 • 박정하 • 김예지

주호영 · 서천호 · 이달희

최보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, 이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있음. 하지만 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, 「재해구호법」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등 다른 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, 이 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.

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, 재난 회복력은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하층의 38.8%가 '아직 사회 재난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았다'라 고 응답해 상층의 11.1%보다 27.7%p 높은 상황임.

이에 재난 피해가 큰 지역에 거주하며 재난에 더욱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규정을 완화하여, 이 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특례)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재난 극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「재해구호법」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등에 따른 구호·보호 또는 지원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신 설>	제3조의2(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특례)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선포된
	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재난 극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
	경우 「재해구호법」, 「국민기 초생활 보장법」 등에 따른 구 호·보호 또는 지원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.